

의안번호	2216106
의 퇴 인	여기구 의원
회 답 일	2026. 5. 12.
추 계 번호	26B044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보좌하여 행정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준비위원회의 심의 또는 준비위원회에 보고된 계획 등의 이행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의무규정
5	안 제8조(국가 등의 지원)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1항)	의무·재량 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유엔해양총회등 기반사업 조성 2. 유엔해양총회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엔해양총회등 계획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제1항)	
7	안 제11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함(제2항)	의무규정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엔해양총회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3	안 제6조(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	
4	안 제7조(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	
5	안 제8조(국가 등의 지원)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6	안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7	안 제11조(기념주화 발행)	
8	안 제12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9	안 제15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2. 상세 사유

□ 2028 유엔해양총회 개요

- 유엔해양총회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 ‘Life Below Water’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상급/고위급회의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음
 - (주요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해양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공유하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논의

[표 1] 유엔해양총회 개최 현황

회차	개최국	개최지 / 개최일자
1차	스웨덴·피지	유엔 본부 / ‘17.6.5.~6.10.
2차	포르투갈·케냐	케냐 나이로비(‘18.11.26~28), 포르투갈 리스본(‘22.6.27.~7.1*) *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
3차	프랑스·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산호세(‘24.6.7~8), 프랑스 니스(‘25.6.9~1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제정안은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집행위원회·준비기획단 등의 지원조직 설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념주화·기념우표 등의 발행,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안 제5조)
- 유엔해양총회 집행위원회(안 제6조)
-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안 제7조)
- 국가 등의 지원(안 제8조)
-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안 제10조)
- 기념주화 발행(안 제11조)
- 기념우표 등의 발행(안 제12조)
-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등(안 제15조)

-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집행위원회·준비기획단 등의 설치, 국가 등의 지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기념주화·기념우표 등의 발행, 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정안은 집행위원회·준비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의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준비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유엔해양총회 개최 준비 및 지원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3542-301) 제4차 UNOC 개최	'28.6월 개최 예정인 제4차 UN해양총회 개최 준비 및 지원(국외여비 265백만원, 공무원 인건비 71백만원)	336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na.go.kr

[참고자료] 2028 유엔해양총회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회의성격)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Life Below Water’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상급/고위급회의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개최
 - 2015년 12월 UN 총회에서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점을 두고 고위급 UN 해양총회 개최를 결의(결의문 : A/RES/70/226)
 - 2017년 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선진국, 개도국 공동 개최 중
 - 보통 선진국이 본행사를 개도국이 그 전년도에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

회차	개최국	개최지 / 개최일자
1차	스웨덴·피지	유엔 본부 / '17.6.5.~6.10.
2차	포르투갈·케냐	케냐 나이로비('18.11.26~28), 포르투갈 리스본('22.6.27.~7.1*) * '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연기
3차	프랑스·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산호세('24.6.7~8), 프랑스 니스('25.6.9~13)

- (주요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해양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공유하고 전 지구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논의
 - SDG 14 목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 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해양이슈 논의
 - UN 해양총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 결의안*은 회원국의 이행 촉구와 전 세계 해양관리의 기준을 선정하는데 기여
 - ['17년 제1차 총회]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A/RES/71/312)
 - ['22년 제2차 총회]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책임"(A/RES/76/296)
 - ['25년 제3차 총회]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 긴급행동을 위한 단결"(A/RES/79/314)

[참고] SDG 14 정의 및 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5년 9월 유엔(UN) 총회에서 채택된 전 세계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 포함
- [SDG14 정의]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을 주제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바다와 해양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목표로 1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 [세부목표] ❶ 해양 오염 방지 (14.1) ❷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 (14.2) ❸ 해양 산성화 영향 최소화 (14.3) ❹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성 보장 (14.4) ❺ 해양 및 연안 지역의 보호 구역 확대 (14.5) ❻ 어업 보조금 규제 (14.6) ❼ 개발도상국의 해양 자원 이용 지원 (14.7) ❽ 해양 연구 및 기술 이전 촉진 (14.A) ❾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14.B) ❿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14.C)